|  |  |  |
| --- | --- | --- |
|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발표에 관한 통지**공신부연전자〔2013〕487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 위원회, 재무국: 　　《국무원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직접회로산업 발전을 격려할 데 관한 몇가지 정책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11]4호）를 실현하고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업무를 강화하고 중국의 직접회로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을 제정한다. 현재 이를 발표하니 집행하기 바란다. 《직접회로 설계기업 및 제품 인정관리방법》(신부연산[2002]86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3년 12월 3일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제1장 총 칙**　　**제1조** 《국무원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직접회로 산업 발전을 격려할 데 관한 몇가지 정책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00]18호）,《국무원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직접회로산업 발전을 진일보 격려할 데 관한 몇가지 정책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11]4호）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직접회로산업 발전을 진일보 격려할 데 관한 기업소득세 정책 통지》（재세[2012]27호）에 근거하여 중국의 직접회로 설계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직접회로 설계기업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중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직접회로 기능연구,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며 재세[2012]27호 문건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부서 직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제4조**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직접회로 설계기업의 인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주요직책은 아래와 같다. （1）전국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및 연도 심사 업무 진행（2）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명단 및 연도심사 합격기업 명단에 대한 공시（3）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및 연도심사 합격기업 명단 공포,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증서 발급　　（4）인정 결과, 연도심사 결과 이의에 대한 제소 접수 및 처리　　**제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공업정보화 주관부서 (이하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로 약칭)는 해당 지역의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신청 및 연도 심사에 대한 접수, 신고 서류의 진실성 확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인정 조건 및 절차**　　**제6조** 인정 신청을 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반드시 재세[2012]27호 문건의 관련 규정 및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처음 연도심사를 진행하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반드시 재세[2012]27호 문건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2차 이상 연도심사를 진행하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재세[2012]27호 문건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외에 기업의 전년도 연간 매출(영업)액이 원칙적으로 2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기업이 직접회로 설계 기업 인정 및 연도 심사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신청표（공업정보화부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2）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세무등기증 및 기업이 취득한 기타 관련 자격증명 등(이상 서류는 카피본에 법인 인감 날인)　（3）기업 직원수, 학력 구성, 연구개발인원 현황 및 전체 직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명, 기업 직원 노동계약 및 사회보험 납입증명 등 관련 증명 서류（4）법적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의 검증을 받은 기업의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표, 현금흐름표 포함) 및 직접회로 설계 매출(영업)액, 직접회로 자주 설계 매출(영업)액, 연구개발 비용, 국내 연구개발 비용 등 （5）기업 자주개발 또는 지적재산권(예를 들면 특허, 레이아읏 설계 등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관련 증명 서류（6）기업 생산경영장소, 개발 환경 및 기술환경 등 관련 증명서류　　（7）제품 품질 보증 관련 증명 서류（예를 들면 품질관리 인증 증서, 고객 사용증명 등）；　　（8）기타 제출 필요한 관련 서류　**제9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및 연도 심사는 아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1）매년 5월 이전에 기업은 재세[2012]27호 문건 및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자기평가를 진행하며 인정 또는 연도심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에 인정 또는 연도 심사 신청을 제출한다. 　　（2）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해당 지역 기업 신청을 일괄로 접수하고 기업 신청서류 취합, 진실성 확인 등을 진행한 후 매년 6월말 이전에 해당 지역 기업 상황을 공업정보화부에 발송한다.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기업 신고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3）공업정보화부는 기술, 관리, 재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재세[2012]27호 문건 및 본 방법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신고 기업의 관련 현황 등에 대하여 규정 부합여부를 심사한다. 　　（4）공업정보화부는 심사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공업정보화부 포털 사이트에 인정 및 연도 심사를 통과한 직접회로 설계기업 명단을 30일간 공시한다. 공시 기간중 인정 또는 연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업정보화부에 이의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시 완료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공업정보화부는 이의 신청에 대해 처리 및 결정한다. （5）공시 상황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매년 9월말 이전에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및 연도 심사 합격기업 명단을 공포한다. 인정 및 연도심사 합격 기업 명단 및 관련 서류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사본을 전달한다. 　　**제10조** 공업정보화부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에 대해 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 인정 및 연도심사에 합격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해당 연도내 유효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증서를 근거로 재세[2012]27호 문건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세수 우대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은 연도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거나 연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직접회로 설계기업 자격을 취소하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증서도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공업정보화부 포털 사이트에 공시한다. 재세[2012]27호 문건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세수 감면 혜택을 받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이 우대혜택 기한 내 연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연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정 증서가 실효한 연도부터 재세[2012]27호 문건에서 규정한 관련 세수혜택 정책을 정지한다. 　　**제13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이 기업명 변경, 분할, 합병, 구조조정, 경영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사안 발생 시 변화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공업정보화부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변화 발생 후 여전히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 자격을 중지한다. 　**제14조**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및 지방 관련 부서는 정책 실시현황 평가 등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중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관련 상황을 취합 정리 후 제때에 공업정보화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공업정보화부,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는 인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평, 공정, 과학, 고효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기업의 상업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6조** 인정 및 연도 심사에 합격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업정보화부는 인정 및 연도심사 자격을 취소하고 3년 내 당해 기업의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 하며 동시에 공업정보화부 포털 사이트에 공시한다. 　　（1）신청 과정중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2）탈세, 누세 행위가 있는 경우　　（3）안전, 품질, 회사관리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 관련 부서의 처벌을 받은 경우（4）기업 인정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회사명 변경, 분할, 합병, 구조조정, 경영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등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이미 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한 경우 관견 부서에서는 추징할 수 있다. 　　**제17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업무에 참여한 인원이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소속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줄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인정 업무 절차 및 업무 원칙을 위반한 행위　　（2）직권 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행위　　（3）인정업무 기밀 규정 등 요구를 위반한 행위　　（4）기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제4장 부 칙**　　**제18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인정을 완료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기간 만료이전에 여전히 《직접회로 설계기업 및 인정 관리방법》（신부연산[2002]86호）에서 규정한 인정 조건에 따라 연도 심사를 진행하며 우대정책 기간 만료 후 본 방법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하나 재세[2012]27호 문건 제3조에서 규정한 우대정책은 향유하지 못한다. 　　**제19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20조** 본 방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직접회로 설계기업 및 제품 인정관리방법》(신부연산[2002]86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关于印发《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管理办法》的通知**工信部联电子〔2013〕487号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发展改革委、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委员会、财务局：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印发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国发[2011]4号），加强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工作，促进我国集成电路产业发展，特制定《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管理办法》。现印发你们，请贯彻执行。《集成电路设计企业及产品认定管理办法》（信部联产[2002]86号）同时废止。　　 特此通知。　　 附件：成电路设计企业认定管理办法　工业和信息化部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3年12月3日 **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管理办法****第一章 总 则**　　 **第一条** （国发[2000]18号）、《国务院关于印发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国发[2011]4号）以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2]27号），为进一步加快我国集成电路设计产业发展，合理确定集成电路设计企业，特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集成电路设计企业，是指在中国境内依法设立的从事集成电路功能研发、设计及相关服务，并符合财税[2012]27号文件有关规定的企业。　　**第三条** 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财政部、国家税务总局根据部门职责做好相关工作。　　**第四条** 工业和信息化部负责全国集成电路设计企业的认定管理工作，主要职责是：　　（一）组织开展全国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和年度审查（以下简称年审）工作；　　（二）对集成电路设计企业拟认定名单和年审合格企业名单进行公示；　　（三）公布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和年审合格企业名单，并颁发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证书；　　（四）受理和处理对认定结果、年审结果的异议申诉。　　**第五条**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以下简称地方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负责本地区集成电路设计企业申请认定或年审的受理，以及申报材料的真实性审核工作。　　　　**第二章 认定条件和程序**　　**第六条** 申请认定的集成电路设计企业须符合财税[2012]27号文件的有关规定和条件。　　**第七条** 初次进行年审的集成电路设计企业，须符合财税[2012]27号文件规定的条件；第二次及以上进行年审的集成电路设计企业，除符合财税[2012]27号文件规定的条件外，企业上一会计年度销售（营业）收入原则上不低于（含）200万元。　　**第八条** 企业申请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和年审须提交下列材料：　　（一）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申请表（可从工业和信息化部门户网站下载）；　　（二）企业法人营业执照副本、税务登记证以及企业取得的其他相关资质证书等（以上均为复印件，需加盖企业公章）；　（三）企业职工人数、学历结构、研究开发人员情况及其占企业职工总数的比例说明，以及企业职工劳动合同和社会保险缴纳证明等相关证明材料；　　（四）经具有国家法定资质的中介机构鉴证的企业上一会计年度财务报表（含资产负债表、损益表、现金流量表）以及集成电路设计销售（营业）收入、集成电路自主设计销售（营业）收入、研究开发费用、境内研究开发费用等情况表；　　（五）企业自主开发或拥有知识产权（如专利、布图设计登记、软件著作权等）的证明材料；　　（六）企业生产经营场所、开发环境及技术支撑环境等相关证明材料；　　（七）保证产品质量的相关证明材料（如质量管理认证证书、用户使用证明等）；　　（八）其他需要出具的有关材料。　**第九条** 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和年审按照下列流程办理：　　（一）每年5月底前申请企业对照财税[2012]27号文件和本办法的要求，进行自我评价，符合认定或年审条件的，可向地方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提出认定或年审申请。　　（二）地方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统一受理本地区企业申请，对企业申请材料进行汇总、真实性审核，并于申报年度6月底前将本地区所有申报企业情况报送工业和信息化部。地方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不得限制企业申报。　　（三）工业和信息化部组织技术、管理、财务等方面专家，按照财税[2012]27号文件和本办法第六条、第七条规定，对申报企业的相关情况等进行合规性审查。　　（四）工业和信息化部根据审查情况做出认定，并在工业和信息化部门户网站上对拟认定和通过年审的集成电路设计企业名单公示30天。公示期间，对认定或年审结果有异议，可向工业和信息化部提交异议申请书及有关证明材料。公示结束后10个工作日内，工业和信息化部对异议申请作出处理决定。　　（五）依据公示情况，工业和信息化部于申报年度9月底前公布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和年审合格企业名单。企业认定和年审合格企业名单及相关材料抄送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财政部、国家税务总局。　　**第十条** 工业和信息化部对集成电路设计企业核发证书。　　**第十一条** 经认定和年审合格的集成电路设计企业凭本年度有效的集成电路设计企业证书，可按财税[2012]27号文件规定向有关部门申请享受相关税收优惠政策。　**第十二条** 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实行年审制度。逾期未报或年审不合格的企业，即取消其集成电路设计企业的资格，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证书自动失效，并在工业和信息化部门户网站上公示。按照财税[2012]27号文件规定享受定期减免税优惠的集成电路设计企业，如在优惠期限内未年审或年审不合格，则在认定证书失效年度停止享受财税[2012]27号文件规定的相关税收优惠政策。　　**第十三条** 经认定的集成电路设计企业发生更名、分立、合并、重组以及经营业务发生重大变化等事项时，应当自发生变化之日起15个工作日内，向工业和信息化部进行书面报备。变化后仍符合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条件的，办理相应的变更手续；变化后不符合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条件的，终止认定资格。　　**第十四条** 中国半导体行业协会及地方相应机构配合开展政策实施情况评估等工作，并由中国半导体行业协会将有关情况汇总后及时报送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　　**第十五条** 工业和信息化部、地方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及相关机构在认定工作中应遵循公平、公正、科学、高效的原则，并为申请企业保守商业秘密。　　　　**第三章 监督管理**　　**第十六条** 经认定和年审合格的集成电路设计企业有以下情形之一的，由工业和信息化部取消其认定和年审资格，三年内不予受理企业认定申请，同时在工业和信息化部门户网站上公示。　　（一）在申请过程中提供虚假信息；　　（二）有偷、骗税等行为的；　　（三）在安全、质量、公司管理等方面有重大违法行为，受到有关部门处罚；　　（四）未及时报告使企业认定条件发生变化的更名、分立、合并、重组以及经营业务重大变化等情况。　　对被取消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资格且当年已享受税收优惠政策的，由有关部门予以追缴。　　**第十七条** 参与集成电路设计企业认定工作的人员如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所属部门或机构责令限期改正，并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违反认定工作程序和工作原则；　　（二）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索贿受贿；　　（三）违反认定工作保密规定等要求；　　（四）其他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　　**第四章 附 则**　　**第十八条** 2011年1月1日前完成认定的集成电路设计企业，在享受企业所得税优惠政策期满前，仍按照《集成电路设计企业及产品认定管理办法》（信部联产[2002]86号）的认定条件进行年审，优惠期满后按照本办法重新认定，但不得享受财税[2012]27号文件第三条规定的优惠政策。　　**第十九条** 本办法由工业和信息化部会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财政部、国家税务总局负责解释。　　**第二十条** 本办法自2014年1月1日起实施，《集成电路设计企业及产品认定管理办法》（信部联产[2002]86号）同时废止。 |